

심 사 보 고 서

○ 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(안)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451호
----------	-------

2016. 10. 14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6년 9월 27일

○ 회부일자 : 2016년 9월 28일

다. 상정일자 : 2016년 10월 7일

○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서승우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출연목적
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도정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·운영하는 (재)충북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

□ 출연 예정액 : 8,150,000천원(도비 100%)

- 출연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2항
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2항
- 산출근거 : 충북연구원 청사 신축 4,800,000천원
 충북연구원 운영 3,000,000천원
 특별연구조직 운영(공공투자분석센터) 350,000천원

※ 증가내역(5,400백만원) : 연구원 청사 신축비 출연금 총당분 4,800 + 2017년 연구원 자체 수입 감소분 600

□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구분 (기준보조율)	2016년			2017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2,750,000	2,750,000	-	8,150,000	5,400,000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- 본 계획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,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,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법적 근거는 적법하다고 판단됨.
- 또한, 충북연구원은 도정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의 운영재원을 매년 지원받고 있음.
- 따라서, 충북의 싱크탱크(Think tank)로서 도정지원 및 수준높은 연구성과 제고와 2017년 충북연구원 청사 신축에 따른 추가 출연금이 필요한 바, 지속적인 재정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.
- 다만, 수탁과제 전입금 및 기금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바, 자체수입 증대 노력 등 자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< 연도별 출연 내역 >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합계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
출연금	15,033	1,600	1,300	1,300	1,600	1,733	2,000	2,750	2,750

2017년도 중복연구원 출연금 내역

□ 중복연구원 청사 신축비

○ 총 사업비(중복개발공사 추정액) : 128억원

(단위: 천원)

구 분	사업비	비고
공사비(예정가)	10,224,000	· 건축비 : 총 118억원 ※ 조달청 공공건축물 건축단가 반영
설계비	615,075	
시설부대비	1,037,200	
예비비	1,000,000	
총계	12,876,275	· 위수탁수수료, 감리비 등

※ 현재, 설계제안공모 기간중으로 세부 산출내역은 최종 설계가 확정되어야 알 수 있음.

○ 출연금 : 48억원 ※ 총공사비 128억원(연구원 기금 80억원, 출연금 48억원)

□ 특별연구조직 운영(공공투자분석센터)

구 분	2016년	2017년	증감 내역
합계	350,000천원	350,000천원	-
사업비	173,000천원	173,000천원	
	· 사전예타 3건 · 투융자 4회 · 연구과제 1~2건	· 사전예타 3건 · 투융자 4회 · 연구과제 1~2건	
인건비	177,000천원	177,000천원	
	· 센터장 1인 · 박사 1인 · 석사 2인	· 센터장 1인 · 박사 1인 · 석사 2인	

※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 없음.

□ 충북연구원 운영비

○ 출 연 금 : 30억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금 액	비 고
세 출	2017년 충북연구원 운영비 총액(A) ※ 청사신축비, 공투센터 제외한 순수 운영비	3,916,078	▶ 2017년 충북연구원 운영비 총액에서 연구원 자체수입 증당분을 제외한 금액 30억원을 출연금으로 요청
세 입	2017년 충북연구원 자체수입(B)	916,078	
	2017년 도 출연금(C=A-B)	3,000,000	

○ 상세내역

(단위 : 천원)

항 목	2016	2017	증 감	사유	
합 계	4,066,516	3,916,078	△150,438	· 전년대비 운영비 약1억 5천만원 절감 편성	
기 관 운영비	소 계	3,411,307	3,257,717	△153,590	
	인 건 비	2,450,298	2,522,541	72,243	<증액내역> : 72,243천원 · 신규 연구직(1명, 16년 4월 채용) 보수 인건비 증가분 반영(12개월 적용) : 16,424천원 · 정근수당 등 제수당 증액 : 11,943천원 · 비정규직차별금지법에 의한 행정원 보수 현실화 및 처우개선비 반영 : 43,876천원(5명, 기본급 및 제수당 반영)
	경 비	834,600	735,176	△99,424	· 예산 절감을 위한 경비 최대 긴축편성
	예 비 비	126,409		△126,409	· 예산 절감을 위한 예비비 미편성
연 구 사업비	소 계	655,209	658,361	3,152	
	자체사업	655,209	658,361	3,152	<증액내역> : 3,152천원 · 발간물(지역정책연구, 동향전망대) 인쇄비 등 물가상승분에 의한 증액 : 6,152천원 · 기본과제 1건 증가 : 3,000천원 · 기획과제 감액 : △6,000천원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안」 1부.

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(안)

의안 번호	45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9. 27.

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출연목적
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도정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·운영하는 (재)충북연구원의 운영 재원 지원

출연 예정액 : 8,150,000천원(도비 100%)

- 출연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2항
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2항
- 산출근거 : 충북연구원 청사 신축 4,800,000천원
충북연구원 운영 3,000,000천원
특별연구조직 운영(공공투자분석센터) 350,000천원

※ 증가내역(5,400백만원) : 연구원 청사 신축비 출연금 총당분 4,800 + 2017년 연구원 자체 수입 감소분 600

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구분 (기준보조율)	2016년			2017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2,750,000	2,750,000	-	8,150,000	5,400,000

1 출자·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정책기획관실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정책관리팀	송재구	이선희	반안나	2134

기관명	충북연구원				
출자·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 장 : 정초시 (*재단법인) ○ 일반현황 : (소재지)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-1 (조직인원) 2실, 4부, 2과, 2분원 / 정원 39명, 현원 31명 (주요기능) 지역현안 정책개발 및 조사·연구 				
출자·출연 사업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8,150,000천원(도비 8,150,000천원)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천원)				
	구 분 (기존보조율)	2016년			2017년 (C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2,750,000	2,750,000	-	8,150,000	5,400,000
<p>* 전년대비 증감내역(5,400백만원 증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원 청사 신축비 출연금 총당분 4,800백만원 - 연구원 자체 수입 감소(이자수입 및 수탁과제 전입금 감소 등) 600백만원 					
출자·출연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원 청사 신축비용 출연(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따른 이전 건립) ○ 수탁과제 전입금 감소, 이자수입 감소 등 전체적인 수입감소가 예상되어, ○ 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출연금 증액 지원이 필요함 				
근거법령	<p>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</p> <p>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2항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</p>				
지도감독 부서인견 (중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연구원 기능 활성화를 통해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○ 충북 싱크탱크로서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활발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. ○ 특히, 2017년도에는 연구원 청사 신축비용 출연, 기금원금 감소 및 금리하락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감소 등 자체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바, 충북연구원 본연의 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출연규모를 금년대비 상향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 3. 출연 사업계획서 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2015 경영평가 결과 : “A” 등급(89.5점)
 - 리더십, 책임경영, 경영시스템(인사, 재무, 제도관리 등) 분야에서 경영혁신 노력과 경영전략, 재무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
 - ☞ 연구과제 신설, 4%경제기획단, 중국연구센터, 환경총량연구팀 구성, 시군정책 자문단 운영, 연구인력 신규채용, 평가제도 개선 등 경영혁신 노력중
 - ☞ 또한 수입·지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매달 예산 사용내역을 점검하는 등 연말에 집중된 사업비 지출을 개선토록 노력중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북연구원 출연금은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도정 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
- 특히, 2017년도에는 연구원 청사 신축에 따른 추가 출연이 필요하며, 기금원금 감소 및 금리하락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감소, 수탁과제 전입금 감소 등으로 자체세입이 금년대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
- 충북연구원의 충북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강화와 더불어,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금년대비 출연규모를 상향하여 출연하는 것이 필요함

3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

(단위:천원)

구 분	2016년 (C)	2017년 예산안		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산정액(B)	증감(B-A)	
출연금	2,750,000	8,310,000	8,150,000	△160,000	5,400,000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1-2 출자출연 기관현황

설립근거	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				전화번호 : 043-220-1141 홈페이지 : www.cri.re.kr		
주요연혁	- 1990.05.15. 충북경제연구소 개소 - 1994.12.27. 충북개발연구원 명칭변경 - 2011.03.24. 충북발전연구원 명칭변경 - 2016.03.31. 충북연구원 명칭변경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출연기관		
인원현황 (‘15.12.31.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81 명		31명		50 명		
임원 (‘15.12.31 기준)	이사장	이○○	충청북도지사		재임기간		
	당연직이사	박○○	충청북도 행정부지사		재임기간		
	당연직이사	서○○	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		재임기간		
	당연직이사	이○○	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		재임기간		
	당연직이사	조○○	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		재임기간		
	당연직이사	연○○	신한은행 충북지역본부장		재임기간		
	당연직이사	정○○	충북발전연구원장		재임기간		
	선임직이사	노○○	청주상공회의소 회장		2013. 04. 03 - 2016. 04. 02		
	선임직이사	손○○	서원대학교 총장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
	선임직이사	한○○	충북지역개발회 회장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
	선임직이사	남○○	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
	선임직이사	이○○	충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
	선임직이사	안○○	청풍로펌 변호사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
	선임직이사	유○○	미래농어촌개발연구원 대표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
	선임직이사	주○○	청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
	선임직이사	이○○	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
	선임직이사	백○○	영동대학교 교수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
	선임직이사	정○○	세명대학교 경영행정복지대학원장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
당연직 감사	송○○	충청북도 정책기획관		재임기간			
선임직 감사	김○○	공인회계사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	
주요기능	-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-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- 국내·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·자료의 수집 및 제공						
자본금 ¹⁾ (단위:백만원)	10,020	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8,720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4	2015	2016	재무현황 (백만원) ‘15.12.31기준	자산	12,422
	예산액 ²⁾	3,204	4,661	4,866		부채	1,886
	지자체 지원액 ³⁾	2,000	2,750	2,750		자본 ¹⁾	10,536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‘15.12.31기준	총수익				총비용		당기순이익
	6,957				7,031		△74

1) 자본금은 자본(자산-부채)의 한 부분이며, 자본은 자본금, 자본잉여금,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

2)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

3) 해당 기관 예산액(2) 번항목)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

1-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충북연구원 운영 지원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정책기획관실		출연	8,150,000천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 대처 및 도정 정책대안 제시
- 도정 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지역발전 견인 정책개발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충북연구원 운영비 지원
- 사업기간 : 2017. 1 ~ 12월
- 출연금액 : 8,150,000천원(도비 100%)
- 주요내용 : 충북연구원 연구사업 지원
- 출연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2항
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2항

□ 산출기초

- 충북연구원 청사 신축 4,800,000천원
- 충북연구원 운영 3,000,000천원, 특별연구조직 운영 350,000천원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합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
출연금	15,033	1,600	1,300	1,300	1,600	1,733	2,000	2,750	2,750

□ 기대효과

- 도정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대안 제시
- 도정 및 시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연구원 청사 이전 건립 차질에 따른 안정적 연구환경 확보 어려움
- 운영비 부족으로,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수탁사업 치중 우려
- 정책대안 제시 등 도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책개발 기능 수행한계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6조(출자·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13조(운영재원)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
2.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<전문개정 2011.5.30.>

□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6조(운영경비)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기금운용의 과실수입
2.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
3. 출판물 판매 대금
4. 그 밖의 수입

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